



시상제도의 의미가 국가 · 사회 · 문화 · 과학 등 국가발전에 탄탄한 초석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성대한 행사로 법률대상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삼 이러한 대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본 상을 주관하는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와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저를 수상자로 추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상제도의 의미가 국가 · 사회 · 문화 · 과학 등 발전에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
우수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관계 분야의 자극제가 될 뿐 아니라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상문화에 따른 경쟁력은 발전과 연관되어 있기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과 같이 각 분야별로 시상제도가 발전하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22일

아시아공법연구소 이사장 丘 秉 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민생입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쇄신과 정치쇄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황우여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수여하는 헌정 우수상(2011년)과 국정감사 우수상(2005년, 2009년)에 이어서 대한민국법률대상 입법부문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의미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과분한 법률대상을 추천·선정해주신 한국헌법연구소 김철수 이사장님과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대한민국법률대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국민께 힘이 되는 좋은 법안을 만드는데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국정감사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우리 의회정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그 법은 국민들의 아픔을 기쁨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당쟁과 이념대립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인 민생입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쇄신과 정치쇄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핵 도발로 인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임하실 수 있도록 초당적 차원에서 정부는 물론 야당과 적극 협력하여 북핵 위기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곧 새정부가 출범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것을 하나하나 잘 실천하여 국민행복국가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영광스러운 큰 상을 주신 법률대상위원회와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22일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黃 祐 呂



정치권이 당리당락에 매몰되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당을 뛰어넘는 국익에 과감히 동참해야 합니다
당락을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에 헌신해야 합니다

입법 분야 발전에 기여한 여러 분들이 계신데 제가 과분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소통과 타협의 정치문화 실현에 노력했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문자 그대로 3권분립의 헌법정신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청와대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당도 대국적 관점에서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혁신일 것입니다.

정치권이 당리당락에 매몰되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당을 뛰어넘는 국익에 과감히 동참해야 합니다.

당락을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에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법률대상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라는 격려이자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법률대상위원회와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2월 22일

국회부의장 朴 炳 錫



窮理盡性을 좌우명으로 삼고 그 실천을 위해서 향후로도 가일층 분발하여 공정한 사법판단에 진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법률소비자연맹과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에서 저에게 제5회 사법부문 법률대상 수상자로 지명해 주셔서 저 개인으제5회로서는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저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과분한 수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법부만 하더라도 훨씬 훌륭한 선후배들이 많이 계신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저로서는 송구스런 부담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해온 것이라고는 사법 업무를 맡은 이래 40여년 동안 제게 맡겨진 재판 업무나 조정업무 등을 최선을 다하려 나름 노력해온 것뿐이며 그것만으로는 매우부족하다고 자인합니다.

잘 아십니까만, 분쟁해결은 국민생활안정과 국가사회 질서의 확립에 기여합니다. 이상적인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소송경제에 맞도록 적정하고 공평한 사법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저 같은 부족한 사람으로서는 계속 긴장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한다고 하였지만 충분하였다고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극기하면서 최선을 다하려 애썼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훨씬 부족한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는 이번 시상을 과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생애에서 국가 사회에 힘껏 계속 봉사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는 그 명제의 의미를 제대로 체득하지는 못한 채, 제 판에는 궁리진성(窮理盡性)을 좌우명으로 삼고 지내왔습니다. 그의 실천을 위해서 향후 가일층 분발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번 저에게 시상으로 격려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법률대상위원회 이 시운 위원님과 공동 심사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법률소비자연맹 김 대인 총재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배려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과 국가사회에의 더 큰 역할로 기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2월 22일

부산법원 민사조정위원회 상임위원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趙 武 濟



국민의 인권보장과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률대상 선정위원회에서,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인 저를 대한민국 법률대상 인권부문 수상자로 선정하여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가, 명망이 높으시고 훌륭한 여러분들과 함께 커다란 상을 받게 되어 일생일대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검찰직역에 종사하는 공직자로서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무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인인 국민을 모시는 공무원, 국민의 가려운 데를 제대로 긁어주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부지런히 일해왔습니다만, 이는 대다수 공직자들이 평상시 행하는 당연한 일임에도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여 국민을 위하여 제대로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뜻 깊은 일을 하시는 법률소비자연맹과 김대인 총재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2월 22일

대검강력부장 검사장 朱 哲 鉉



억울한 분들이 위로 받을 수 있도록, 겸허히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의원입니다.

입법, 사법, 학술 등의 분야에서 법치주의, 민주주의와 법률문화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리더들을 찾아서 시상하는 대한민국 법률대상의 사법개혁부문 법률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법치질서와 공정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대한민국 법률대상 위원회와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정치에 발을 딛으면서 무엇이 되려고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회에 태어나서 받은 은혜에 대한 빚을 갚고 또 저를 지지해 준 분들에게 대한 보답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눈이 있어도 억울함은 남는다.” 최근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국가 권력은 강한 자에, 권력을 쥔 자에, 금권에 고개 숙이고, 약자에게, 힘 없고 가난한 국민에게 칼을 휘두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 반칙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1% 특권층을 대변하는 사회가 아닌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법률대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진정한 법치가 이루어지도록, 고단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가슴에 억울함을 담고 살아가지 않도록, 억울한 분들이 위로 받을 수 있도록, 겸허히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朴 映 宣**



“Do the Right Thing!”

먼저, 제가 왜 문자 그대로 법률대상이라는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었는지 약간 얼떨떨한 기분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오늘 같이 수상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볼 때 더욱 더 제가 이 상을 받게 된 게 법률연맹에 계신 분들이 작업상 큰 실수를 하신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실수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저는 이 상을 받는 소감을 요약하자면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오고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도 공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의 순수한 직업적인 일 이외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은 특별히 어떤 결과를 추구해서 한 것은 아니고, 소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에게서 맡은 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는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함과, 적극적으로는 내가 소속한 사회에서 나에게 변호사라는 license, 즉, 면허를 준 이 사회에 뭘가는 남기고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회에 대한 채무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일들이 점점 일이 많아져서 한 가지 일이 또 다른 일을 낳게 되고 또 다른 일로 번지게 되고 해서 오늘 까지 왔습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o good deeds go unpunished." 원래 뜻대로 의역하자면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그 뜻과는 달리 비판 소리를 듣거나 피해를 본다" 는 데서 나온 이야기지만, 반 우스개 소리로 "좋은 일을 하면 계속 좋은 일을 더 많이 시켜서 "벌"을 준다" 는 뜻으로 말합니다. 저도 그런 선의의 피해자 중의 하나라고 할까요.

비영리 단체나 교육관계 일로 자문 회의나 이사회 등 모임을 할 때 보면 제가 법률 공부를 했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해도 저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도 제 의견에 색 다른 무게를 두고 들으시거나 또는 그런 기대를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게 돈을 주고 일을 맡기는 클라이언트 일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것이 아마도 남이 내게 씌우는 의무감 보다도 내가 자신에게 씌우는 책임감이 훨씬 무겁고 중요하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상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법치주의의 기본은 결과 보다는 절차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로 요약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회의 부조리나 비리 또는 비합리적인 일 들이 대부분은 절차를 결과에 희생시키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창업자나 경영권의 승계 대상자는 소유 주식이나 재정능력과 상관 없이 경영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써도 사회 정서에 어필하며 그래도 내가 맡아서 잘 경영하여 고용도 늘리고 수출도 잘하면 좋은 일이 아닙니까 하며 법 테두리 밖에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의 많은 판결문들이 그런 것을 법 이론 밖에서 정당화 해 줬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렴한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개혁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한 많은 정치인이나 정치인 희망자들이 그래도 나의 그 숭고한 꿈을 펼치려면 일단 정치인으로 선출이 되어야 하기에 불법 편법으로 라도 정치인이 일단 되어야 한다는 데서 오는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을 끊임 없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 보다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자연 법칙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더라도 절차를 지키고 결과에 승복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선진사회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궁극적인 결과는 딱 하나, 죽음입니다. 인생은 거기에 도달하는 여러 가지 굴곡 많은 과정입니다. 그 중간에 생기는 "결과"는 진정한 결과가 아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올바르게 몇몇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절차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려면 그 절차가 공정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설사 기존 절차에 공정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그 절차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정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 되어야 하는 게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독재가 아닌 아주 시끄럽고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면 잘못된 법과 절차는 바꿀 수 있고 그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면서 국민 하나 하나가 항상 절차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려면 특히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절차를 중요시하는 모범을 보이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흘 뒤면 대통령이 되실 당선인께서 이번에 특히 정책이나 인선에서 법치주의를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된 기분입니다. 제가 바라는 법치주의는 단순히 있는 법을 충실히 집행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법과 규율의 "문자"가 아니라 그 법과 규율의 "정신"을 몸에 배도록 한다는 그런 넓은 차원에서의 법치주의 추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 연방 공무원에게 \$25 이상의 식사 접대나 선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혹시 \$30 짜리 점심 사줬거나 접대 받았다고 아무도 감옥에 갈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런 접대나 선물을 할까 생각하다가도 혹시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하고 한 번 짚은 신중히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비슷한 법이 한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있다고 하면 가장 첫 짚 반응은 \$25 은 비현실적으로 낮은 금액이니 현실적으로 넉넉히 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상한액을 \$1,000 로 해 주더라도 \$1,200 짜리 선물을 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전혀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정신을 respect (존중) 하는 것과 법의 문자에 단순히 comply (준수) 하는 것과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 Harvard 의 저명한 철학자 Michael Sandell 교수를 만났더니 자신이 한국에서 다른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superstar 가 되고 자신의 저서 "Justice: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가 엄청난 베스트 셀러가 된 데 대해 기뻐하면서도 약간 의아해 하더군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일반 상식 대로 행동하면 뭐가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자명하기 때문이죠.

많은 비리나 부패가 저질러지는 것은 옳은 일이 뭔지 불명확해서가 아니라 상식에서 벗어나는 지 뻔히 알면서 사회 통념상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람 되나마 끝 맺음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합니다: "Let's all do the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농담 삼아 첨언 하자면 Sandell 교수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본인도 아버지 따라선지 철학에 관심이 많은데, Sandell 교수 본인은 자신의 아들이 law school 가기를 매우 희망하고 있더군요.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22일

변호사 金 泳 俊

